

# 조선 후기 궁방(宮房) 제택(第宅)의 종류와 성격

##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oyal Residenc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이종서 Lee, Jong-Seo\* |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Received: 2024.08.22. Revised: 2024.10.04. Accepted: 2024.10.13.

### ABSTRACT

In this paper, the royal residence was divided into a mansion in the capital, a house built in the name of memorial in a burial place, and a mansion on a farm, and examined the character and structure of each house. The large and splendid mansions in the capital were issued by the state, and the laws restricting the scale of construction were avoided or violated from the time they were enacted, and lost its effect around the time of King Jungjong. In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new houses were built, but gradually it became customary to buy existing houses and repair and expand them. Houses built near tombs were nominally memorial facilities, but they had the structure of houses and were owned and lived in by descendants for generations. The houses built on the site of farms functioned as both farm management office and villas, and were retained by royal descendants even after their royal privileges expired. The classification of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oyal residences carried out in this paper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analyzing the existing royal buildings, which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Royal houses(Gung-jip)'.

주제어 : 궁방, 왕족제택, 제청, 별업

Keywords : Gungbang, Royal Mansion in a Capital city, Memorial facility of House Structure, Mansion on a Farm

### 1. 서론

조선 후기에 국가에서는 궁방을 설치하여 왕실 인사의 품요롭고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였다. 궁방은 자체 관리 인력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궁방 주인이 거주하는 도성 내의 주택을 뜻하기도 하였다.<sup>1)</sup> 혼인한 왕자·왕녀와 늙거나 국왕이 사망한 후궁은 국가에서 지급한 도성 내 주택에서 살았다. 궁방은 도성 밖에도 주택을 소유하였다. 혼인한 왕자·왕녀나 후궁이 사망하면 국가에서 묘소 인근에 '제청(祭廳)'을 지어 주었다. 본문에서 살펴볼지라도, '제청'의 채 구분

\* Corresponding Author: Lee, Jong-Seo,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 University of Ulsan, 93, Daehak-ro 93beon-gil, Nam-gu, Ulsan-si, Republic of Korea. E-mail: ljs6102@naver.com

1) '궁방'은 '궁'과 '방'의 합칭으로 용례를 보면 '~궁~방', '~궁방'을 혼용하였다. 원칙적으로는 '궁'이 '방'보다 격이 높은 용어였던 듯하다. ("비망기에 '전부터 대군·왕자·공주·옹주방을 통칭하여 궁가라고 하였으며 명호를 나누어 짓는 일은 원래 없었다. ... 그런데 승지가 전교가 있지도 않았는데 별도로 의견을 내어 영안위방을 궁으로 칭하여 길례궁이라고 하였다. 칭한 바가 왕의 자식을 가볍게 여기고 모멸하는 뜻이 있으니 매우 놀랍다' 라고 하였다[備忘記 自前大君王子公翁主房 通稱宮家 而元無分作名號之事(중략)而承旨 不有傳教 別生意見 永安尉房則稱宮 吉禮宮 則稱所 顯有輕侮王子之意 殊甚駭然]. 『승정원일기』, 416책 속종 30년(1704) 2월 3일(계유))

과 내부 구획은, 신주를 모시는 사당이나 제례를 거행하는 정자각과 다르고, 조선 후기 상류 주택과 유사하다. 구조면에서 거주에 적합한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도성 밖에 '별업'으로 불린 주택도 소유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들 세 종류의 궁방 주택을, 조선시대 역사 기록에서 확인되는 용어인 '제택'으로 통칭하겠다.<sup>2)</sup>

건축역사학계의 기존 연구에서는 궁방 제택을 '궁집', '궁가(宮家)' 등으로 통칭하고,<sup>3)</sup> 고급 건축 기법과 양식에 주목하였다.<sup>4)</sup> 반면에 제택의 종류와 성격 파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궁방 제택의 규모나 조영 방식에 대한 검토도 충분치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궁방 제택을 관용적으로 '~궁'으로 불린 도성 내 제택, 도성 밖 묘소 인근의 '제청(祭廳)', 지방의 농장과

2) 조선 전기에 주택을 '제택'과 '여염(閭閻)'으로 구분한 사례가 확인된다. "제택은 구름을 깔보며 우뚝 서고, 여염은 땅에 엮드려 서로 잇달았다[第宅凌雲屹立 閭閻撲地相連]."(『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1398) 4월 26일(임인))라고 표현하였다. 이로부터 규모와 격식을 갖춘 지배층의 고급 주택을 '제택'으로 통칭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기록인 『승정원일기』에서도 왕족의 주택을 대부분 '제택'으로 표현하였다.

3) 주남철, 『궁집(宮家)』, 일지사, 2003.

4) 안소현·전봉희, 『조선 후기 궁실건축에 사용된 격식기법의 유형과 변천』, 『건축역사연구』, 21권, 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9.

## 22 논문 | 이종서

연계된 '별업(別業)'으로 구분하고, 역사 기록을 살펴 제택의 확보 및 영조(營造) 방식을 확인할 것이다. 본고는 현존하는 개별 궁방 제택들의 성격과 건축 이력을 파악하고, 건축 기법이나 양식의 시대성과 시대적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 2. 도성 내 왕족 제택의 규모와 구성

#### 2-1. 도성 내 제택의 지급 방식과 규모

왕자·왕녀의 혼인이 결정되면, 국가에서는 도성 내에 거주할 제택을 마련해 주었다. 조선 초에는 국가에서 경비와 노동력을 동원하여 새로 지어주었다. 그러나 택지가 부족해지자 수십 채의 민가를 철거하고 새로 지어 재물과 노동력을 낭비했으며, 새 건물을 지나치게 호화롭고 크게 짓는다는 비판이 일어났다.<sup>5)</sup> 이에 구조재의 규모와 칸수를 제한하였으며,<sup>6)</sup> 새로 건축하지 않고 기존의 제택을 매입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sup>7)</sup> 조선 후기에 궁방의 도성 내 제택은 대부분 국가에서 매입가를 책정하여 궁방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다.

세종과 성종 때에는 규정을 만들어 제택의 규모를 제한하였다. 대군은 60칸, 군·공주는 50칸, 옹주는 40칸이 한도였다. 성종 때의 제한령에서는 전체 칸수 외에 정방·익랑 등으로 구성되는 핵심건물 칸수가 대군 12칸, 군·공주 9칸으로 정해졌다. 전체 칸수는 사랑, 행랑 등의 부속채까지 포함한 칸수임이 분명하다.<sup>8)</sup> 그러나 왕자·왕녀는 층루를 빙 둘러 지어 공간을 넓히는 등<sup>9)</sup> 규정을 어기거나 회피하며 제택을 크고 호화롭게 지었다.

제한 규정을 승인한 성종조차 왕자·왕녀들이 제택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비판하는 관리들에게 “왕자들의 제택이 제도를 넘는다고 치수를 고쳐 정한다면 제도를 넘는 관리들의 집은 모두 허물어야 마땅한가[諸君第宅若以爲過制 改定尺寸 則凡朝官過制之家 皆當壞之乎]?”라고 반박하였다. 도성 내 관리들의 주택 중에도 제한규정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대들의 집이 왕자군의 집 가까이 있는데 바쳐서 값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찌 거절하고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假使卿等之家 近於王子君第 欲獻而受價 豈可拒而不受乎]?”라고도 하였다. 왕자·왕녀가 규정에 따라 제택을 지어도 이후 주변의 인가를 사서 제택을

확대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중종 이후 가사제한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선언적인 법령이 되었다.

승정원에게 전하시기를 “...사헌부에서 『대전(大典)』에 근거하여 제도를 넘는 가사의 간각(間闕)을 헐자고 청하였는데...다만 행랑을 함께 철거하면 원망하고 근심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노인과 주인은 분별이 있어서 함께 거처할 수 없다...내가 듣기에 성종 때에 행랑을 철거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한성부에서 문적(文籍)을 잃어버려 찾아서 상고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 역시 헐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sup>11)</sup>

1515년(중종 10) 중종은 노비와 하인이 거처하는 곳은 전체 칸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종의 의견을 따르면 대군 60칸에서 옹주 40칸에 이르는 제한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1523년 중종은 왕자·왕녀의 제택이 제도를 어겼다는 비판에 대해 “비록 선대왕들 때에도 왕자의 집은 『대전』의 규정을 한결같이 따르지는 않았다. 지금 혜정 옹주의 집은 단지 70칸일 뿐인데 비록 제도를 넘는 듯해도 반드시 그 용처를 계산하여 지었을 것이니, 고칠 수 없다.”라고 하여<sup>12)</sup> 성종 때 성립한 제한 규정을 공공연히 무시하였다. 선조가 지어 준 의안군 제택은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과 명군의 사령부가 되었고, 이후 중국 사신이 묵는 관소(館所)로 쓰였을 만큼 규모가 방대하고 웅장하였다.<sup>13)</sup>

이처럼 성종 때의 가사제한령은 성립 시점부터 규제력이 강하지 못했으며, 중종 무렵에는 사문화되었다. 신하들이 왕자·왕녀 제택의 사치스러움을 비판하는 논거가 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궁방 제택의 규모를 가사제한령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전하는 궁방 가도(家圖)에서 전체 칸수가 가사제한령의 한도를 벗어나는 것은 제한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도성 내 궁방 제택 중에는 대략적인 칸수가 기록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가도(家圖)에서는 건물의 구성과 전체 칸수가 확인된다. 인조는 선조의 딸 정명공주에게 ‘제도에 벗어났다’는 평을 들은 제택을 지어 주었으며, 이 집이 좁다는 이유로 새로 200칸을 지을 수 있는 물자를 주려

10) 『성종실록』, 권266, 성종 23년(1492) 6월 23일(임술); 권268, 성종 23년 8월 6일(갑진)

11) “傳于政院曰 司憲府據大典 請撤過制家舍間闕(중략)但竝撤行廊 怨悶者頗多 奴主有分 不可同處(중략)予聞 成宗朝有勿撤行廊之教 而漢城府遺失文籍 未得搜考 今亦勿毀 何如”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1515) 5월 10일(병신)

12) “雖在祖宗朝 王子家舍則亦不一從大典 今惠靜之家只七十間 雖似過制 然必計其用處而爲之 不可改也” 『중종실록』, 권47, 중종 18년(1523) 4월 25일(병신)

13)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南別宮)의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권, 1호, 2020 참조.

5) 『문종실록』, 권7, 문종 1년(1451) 4월 1일(기사) 기사 참조.

6) 『세종실록』, 권123, 세종 31년(1449) 1월 26일(정미); 『성종실록』, 권95, 성종 9년(1478) 8월 22일(신해)

7) 『세조실록』, 권29, 세조 8년(1462) 11월 20일(경술) 기사 참조.

8) 『세종실록』, 권123, 세종 31년(1449) 1월 26일(정미); 『성종실록』, 권95, 성종 9년(1478) 8월 22일(신해)

9) 『성종실록』, 권271, 성종 23년(1492) 11월 14일(신사)

하였다. 새 집터는 중종의 딸인 혜순옹주(광천위)의 제택이었다. 신하들이 건축을 반대하자 인조는 혜순옹주 제택이 300여 칸이었는데, 새로 짓는 정명공주 제택은 100여 칸이니 ‘오히려 좁고 작다고 여긴다’라고 반박하였다.<sup>14)</sup>

현종 때에는 효종의 딸 숙희공주(인평위)와 숙경공주(흥평위)의 제택이 화려하고 크다는 비난을 받았다. 숙희공주는 사치를 경계하는 시조부의 권유로 제택에서 70칸을 허물었으며, 이후 유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숙종이 매입하여 연잉군(영조)에게 주었다. 숙경공주 제택의 전체 칸수는 200여칸에 이르렀다.<sup>15)</sup> 조선 후기 가도에서는 효종의 딸 숙명공주(청평위) 제택의 160여 칸에 이르는 평면 구조가 상세하게 확인된다.<sup>16)</sup>

### 2-2. 명온공주 제택의 영조 방식과 구성

조선 후기에 궁방 제택은 대부분 기존 주택을 사서 수리·확장하는 방식으로 조영하였으며, 세종·성종 때에 성립한 칸수 제한은 의미를 잃었다. 순조의 딸 명온공주(1810~1832)의 혼인 과정을 정리한 『명온공주가례등록』(1827년)에서는 조선 후기 왕자·왕녀 제택의 조영 방식과 전체 규모, 건물 분포가 잘 나타난다. 등록에는 기존 주택의 매입가, 수리한 기존 건물과 신축한 건물, 각 건물의 성격과 구획 및 칸수가 정리되어 있다.

명온공주의 혼인이 결정되자 이전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택 구입가를 1530냥으로 결정하였다.<sup>17)</sup> 호조에서 보고한 이전 사례의 구입가는 다음과 같다.

표 1. 명온공주 제택 가격 책정에 참고한 사례

	명안공주	화순옹주	화평옹주	화협옹주	청연군주	숙선옹주
은자(냥)	2000	1500	1995	1648	1541	1541
부친	현종	영조	영조	영조	사도세자	정조

[표 1]에서는 현종의 딸인 명안공주부터 정조의 딸인 숙선옹주에 이르기까지 제택의 가격이 확인된다. 사례가 누적되면서 관행적인 매입가가 1500냥에서 2000냥 사이에서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명온공주의 제택 가격은 은자 1530냥으로 책정하였다.<sup>18)</sup> 그러나 1530냥은 기존 주택을 구입하여 궁

14) 『인조실록』, 권6, 인조 2년(1624) 6월 7일(기축); 권8, 인조 3년(1625) 2월 27일(병오) 참조.

15) 『승정원일기』, 406책, 숙종 28년(1702) 8월 10일(기축); 1205책, 영조 38년(1762) 5월 16일(기유); 185책, 현종 5년(1664) 10월 15일(계유) 참조.

16) 주남철, 『조선시대 청평위궁(淸平尉宮)의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권, 7호, 2011 참조.

17) 『명온공주방가례등록(明溫公主房嘉禮臚錄)』, 『명온공주방경진사일일수본(明溫公主房庚辰四月日手本)』

주 제택으로 완성하기까지 투입한 전체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하였다.

호조에서는 황은(黃銀) 1530냥에 해당하는 값으로 동전 4590냥을 명온공주 궁방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돈은 공주가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내수사에서 별도로 5000냥을 보내 순조의 장인 영안부원군 김조순(1765~1832)의 집을 매입하였다. 명온공주 궁방에 지급한 4590냥으로는 내인(內人) 거주처가 될 뒷집 매입비용과 공주 부처가 거주할 김조순의 옛집 수리·증축 비용으로 각기 2000냥과 2590냥을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제택 구입 및 수리에 국가에서 1만 냥 가까이 지출하였다. 이 금액과 별도로 내수사에서 부족한 임금과 물자를 지급하였다. 재목, 석재, 기와는 호조에서 수송하여 주었다.<sup>19)</sup> 다른 왕자·왕녀의 제택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영했을 것이다.

명온공주 제택에서 공주 부부가 거주하는 핵심부는 ‘안채’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과 ‘사랑(舍廊)’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안채 영역 핵심부의 규모는 내대청, 상방(잇방), 월방(건년방) 등 42.5칸이었다. 여기에 내후행각(內後行閣) 등으로 불린 행랑 34칸과, 진지간 등 부속채 44.5칸이 딸려 있어 전체 칸수가 121칸에 이르렀다. 사랑은 대사랑과 소사랑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사랑이 19.5칸, 소사랑이 7.5칸이었다. 여기에 대사랑행각, 산정(山亭), 대문, 노자방(奴子房) 등 79칸이 딸려 있어 전체 칸수는 106칸이었다. 이밖에 사당과 사당 부속 건물 11칸이 있었다. 그러므로 명온공주 제택은 공주 부처가 거주하는 영역만 238칸이었다. 내인거처 113칸, 행랑중문과 이각문 43칸을 더하면 총 394칸에 달하였다.

명온공주 부처가 거주할 238칸 규모의 제택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로 구성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sup>20)</sup>

[표 2]에서 보듯 총 238칸 중 148칸은 기존 건물을 개수하였고, 90칸을 새로 지었다. 안채 영역의 핵심부 42.5칸 중 40칸과 소사랑 7.5칸은 기존 건물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19.5칸 규모의 대사랑은 전체를 새로 지었다. 이로부터 안채 핵심부와 소사랑은 김조순의 집이었을 때의 구조와 구획을 유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안채는 공주가 거주하기에

18) “(戶曹)啓曰即接內需司 啓下牒呈則明溫公主房第宅價銀子 報戶曹劃給事 奉承傳教矣 取考前後已例則(公·翁)主第宅價銀子多寡不一 明安公主房二千兩 和順翁主房一千五百兩 和平翁主房一千九百九十五兩 和協翁主房一千六百四十八兩三錢五分 淸衍郡主房一千五百四十一兩三錢五分 淑善翁主房一千五百四十一兩三錢五分 今番則以何房例舉行事 敢稟 以一千五百三十兩上下事 下教” 『명온공주방가례등록』, 『호조초기(戶曹草記)』

19) “明溫公主房第宅價 依判下數黃銀一千五百三十兩代錢四千五百九十兩 第宅定於大寺洞永安府院君房 價本則以內需司五千兩輸送 內人入接處後家買得而價本二千兩 故黃銀價中輸送 其餘銀價二千五百九十兩本宮改建時補用 而工匠料布及物財不足之數及鐵物自內司專以擔當 木石瓦子以戶曹隨所入輸送 材木則東倉所峙木輸送事下教” 『명온공주방가례등록』, 『호조수송(戶曹輸送)』

20) 『명온공주방가례등록』, 『본궁간수(本宮間數)』

## 24 논문 | 이종서

충분한 규모와 격식을 갖추었지만, 7.5칸 규모의 기존 사랑은 공주 제택의 규모나 위상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었기에 대 규모 건물을 신축했을 것이다.

표 2. 도성 내 명온공주 제택 안채 핵심부의 규모

영역	구획	개수(改修)	신건(新建)	칸
안채	핵심부	40	2.5	42.5
	행랑	31.5	2.5	34
	부속채	19.5	25	44.5
사랑	대사랑		19.5	19.5
	소사랑	7.5		7.5
	부속채	38.5	40.5	79
사당		11		11
계		148	90	238

명온공주의 도성 내 제택에 대규모 사랑을 신축한 것은 국왕의 방문에 대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김조순이 당대의 고관이자 순조의 장인이었음을 고려하면 7.5칸 규모의 기존 사랑은 40칸 규모의 안채와 마찬가지로 김조순의 집에 적절한 규모로 여겨졌을 것이다. 부마의 건물로도 협소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19.5칸의 대사랑을 별도로 신축한 것은 국왕에게 적합한 규모의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례로 영조는 화평옹주의 집을 방문했다가 궁궐로 돌아올 때에 “옹주 집의 사랑 및 내외 대문은 거처하고 출입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분부하라[主第舍廊及內外大門 許令居處出入事 分付].”고 명령하였다.<sup>21)</sup> 이는 국왕이 거처한 건물과 드나든 문은 민간의 사용을 금하는 원칙이 있었으며, 영조가 화평옹주 제택을 방문했을 때에 사랑에 거처했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명온공주 궁방의 도성 내 238칸 규모의 제택은 공주가 혼인한 1827년에 신축한 건물과 기존 건물이 섞여 있었다. 기존 사랑과 별도로 대규모의 사랑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러므로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의 건축 시점 사이에 건축 양식이나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면, 제택에는 서로 다른 양식과 구조가 혼재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조선 후기의 다른 궁방 제택에도 적용할 수 있다.

### 3. 도성 외 궁방 제택-제청(祭廳)과 별업(別業)

#### 3-1. 제청의 구조와 성격

##### 1) 숙빈(淑嬪) 최씨 제청의 구조

조선후기 궁방에서는 도성 밖에도 제택을 소유하였다. 도성 밖의 제택은 제청(祭廳)과 별업(別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왕자·공주, 후궁이 사망하면 국가에서 묘역에 제청을 지어 주는 것이 조선후기의 관행이었다.<sup>22)</sup> 국가에서 공신이나 고위

21) 『승정원일기』, 1033책, 영조 24년(1748) 8월 4일(병술)

22)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공주·옹주·부마의 묘산(墓山)이 있는 곳에서 오래 제청을 지어 주는 일이 있다. 이 봄에 황창부위의 묘소를 옮겨 장사할 때에 제청을 조성해 주지 않았으니 관례대로 추후에 지어

관료에게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으며, 민간에서도 제청 건축이 유행하였다.<sup>23)</sup> 그런데 조선후기 궁방 ‘제청’의 구조는 주거 기능을 갖춘 주택과 다름이 없었다. 궁방 제청의 채 구성과 채 내부의 구획은 영조의 생모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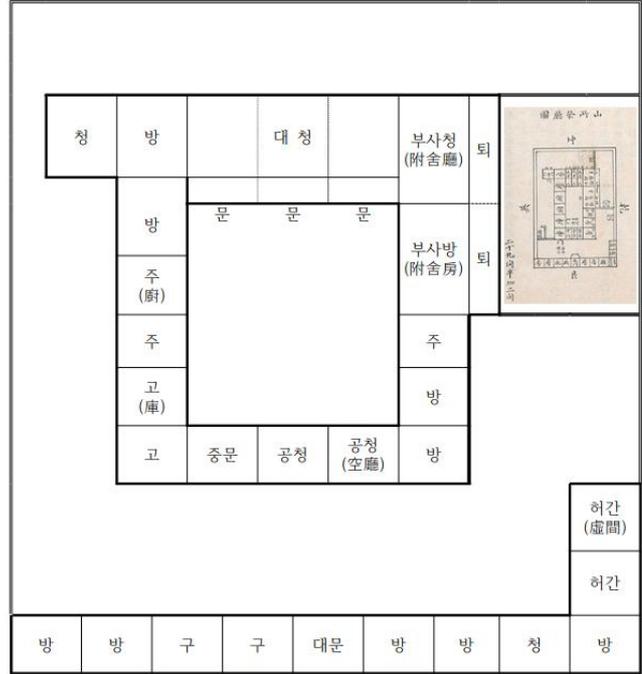


그림 1. 숙빈 최씨 제청의 계획도면

숙빈최씨가 죽자 국가에서는 최씨의 묘역에 제청을 지어주었다. 제청은 현존하지 않지만, 평면도가 전하여 채의 구성과 평면 구획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숙빈 최씨 제청으로 계획했던 도면이고<sup>24)</sup> [그림 2]는 실제로 건축한 도면이다.<sup>25)</sup> 본래 29.5칸에 2칸을 더하여 총 31.5칸으로 계획하였으나 이 도면을 쓰지 않고, 실행 도면대로 지었다. 두 가도의 평면 구획은 모두 마루(청), 방, 부엌(주) 등으로 구성되어 주거에 적합하다. 전퇴 전면에 문을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한 계획 도면에 비해 전퇴와 대청 사이에 분합을 설치한 실행 도면은 조선후기 주택의 보편적 구조에 더욱 가깝다. 숙빈 최씨 제청의 도면은 조선 후기 왕실 제청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주라고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셨다[上曰 公翁主駙馬墓山所在處 則例有自官造給祭廳之事矣 今春黃昌副尉選葬時 祭廳未及造成 所當依例追後造給 竝爲分付 可也].” 『승정원일기』, 317책, 숙종 12년(1686) 7월 20일(임인)

23) 정해득, 『조선후기 묘소 관리와 묘사의 확산』, 『대구사학』, 153권, 2023.

24) 『무술첨차일기』(1718년, 숙종 44), 「산소제청도」

25) 『제청급석물조성시등록』(1718년, 숙종 44), 「제청도」

건물을 '제청·사랑(祭廳舍廊)'으로 표기하여, 제청과 사랑을 구별하였다.<sup>27)</sup>

명온공주의 제청을 계획할 때에 명온공주 궁방에서 실무를 담당하기로 했지만, 결과를 보면 제청과 사랑의 영조 방식과 영조 주체가 달라졌다. 제청은 새로 지은 반면, 사랑과 부속 행각은 기존 주택을 옮겨서 지었다. 제청 건물은 내수사에서 실무를 담당하여 지었고, 명온공주 궁방에서는 기존 주택을 구성했던 건물을 옮겨 사랑과 행각 건물로 만드는 일을 담당하였다. 또한 궁방 제청의 관례화된 규모는 19.5칸이었으나, 명온공주 제청은 17칸으로 도형을 작성하여 건축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청과 사랑의 평면 구획과 칸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sup>28)</sup>

표 3. 명온공주 제청의 평면 구획과 칸수

구분	구획	칸	전퇴	계	비고
제청	대청	4.5	1.5		신축
	서상방	3	1		
	동상방	2			
	누	2			
	주(廚)	3			
	신문(神門)	1			
	동일각문	1			
소계	16.5	2.5	19		
사랑	방	2	1		기존 건물 이건
	청	2	1		
	서월방	1	0.5		
	중문	2			
	고	2			
	공간(空間)	1			
소계	10	2.5	12.5		
묘직 입접처 (墓直 入接處) 등	상방	1.5			기존 건물 이건
	청	3			
	월방	1.5			
	주	1.5			
	대문	1			
	산직번방	1			
	마구	2			
소계	11.5		11.5		
계		43			

[표 3]에서 보듯 명온공주 제청의 건물은 제청, 사랑, 부속

27) “계사년 2월 일 대내에서 하사한 돈 3000냥, 4월 2일 명례궁에서 온 돈 1000냥, 도합 4000냥을 정하여 내려주는데 묘소 영건과 제청·사랑 및 행각, 식목, 보토, 사묘 수리 등의 항목은 본궁에서 거행하라는 교명이 있었다[癸巳二月 日 內下錢文三千兩 四月初二日明禮宮來錢文一千兩合四千兩 劃下 墓所營建 祭廳舍廊及行閣 植木 補土 祠廟修補等節 自本宮舉行事有教]”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 「제문(祭文)」

28) “禮葬原例 祭廳十九間半 而以十七間出圖形成造 大廳四間半前退一間半 西上房三間前退一間 東上房二間 樓二間 廚三間 神門一間 東一角門一間 土牆三十間[以上內需司舉行] 舍廊 房二間前退一間 廳二間前退一間 西越房一間前退樓半間 中門二間 庫二間 空間一間 墓直入接處 上房一間半 廳三間 越房一間半 廚一間半 大門一間 山直番房一間 馬廄二間[以上自本宮舊舍移建而間用新備材木]”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 「제청택일기(祭廳擇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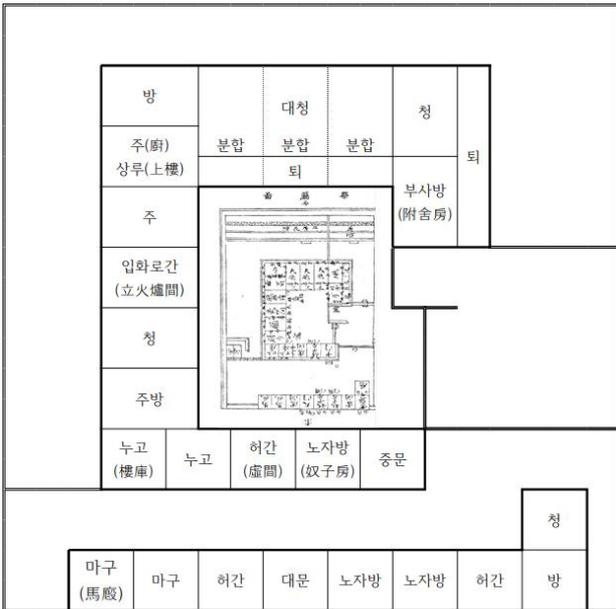


그림 2. 숙빈 최씨 제청의 실행도면

제청을 주거 시설로 인식한 것은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조선 후기 지배층은 묘소 인근에 묘사(廟祠) 명목으로 건축한 주거용 건물을 '병사(丙舍)'로 칭하기도 하였다. 숙빈 최씨 제청을 '병사(丙舍)'로 칭한 사례도 확인된다. 영조가 즉위 후 어머니인 숙빈 최씨의 묘소에 가 제청에서 유숙하려 하자 '사묘(私墓)의 병사(丙舍)'로서 즉위 전에는 자주 갔더라도 즉위 후에는 '사제(私第)'이므로 묵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sup>26)</sup> 영조가 실행도면대로 지은 숙빈 최씨 제청에서 유숙한 것과, 신하가 이 제청을 '병사', '사제'로 표현한 사례는 제청을 주택과 다름없이 여겼던 당시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2) 명온공주 제청의 구조와 성격

궁방 제청의 구조는 명온공주(1810~1832)의 상장례 절차와 묘소 조영 내역 등을 정리한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1833년)에도 잘 나타난다. 등록에서는 제청의 구조와 더불어 영조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명온공주의 묘소가 동부 송신방의 종암리(鍾巖里)로 결정되자 묘소 조영과 더불어 제청을 건립하였다. 묘소와 제청 영건, 식목(植木), 보토(補土), 도성 내 제택의 사당 수리비용으로 4000냥을 책정하였으며, 실무는 명온공주 궁방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제청 일곽을 구성하는

26) “영의정 홍치중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이번에 새 능에 갔다가 돌아 오실 때에 양주의 사묘(私墓)에 들렀다가 묘 아래에서 밤을 지내실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 사묘의 병사(丙舍)는 비록 잠저에 계실 때에 늘 다녔어도 지금에 있어서는 끝내 사제(私第)입니다. … 이미 임금이 머물러 숙박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領議政洪致中疏曰 伏以臣伏聞今此新陵行幸返駕時 又將歷展於楊州私墓 而仍於墓下經宿云 (중략)私墓丙舍 雖潛邸時所嘗御者 而在今終是私第(중략)已不合於聖駕之宿留.』” 『승정원일기』 730책 영조 7년(1731) 9월 9일(기사)

채로 구성되었다. 제청 건물로 진입하는 문을 ‘신문(神門)’으로 칭한 것은 ‘제청’을 제사용 건물로 규정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제청’의 평면 구획은 4.5칸 규모의 대청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에 각기 3칸, 2칸 규모의 방을 두었으며, 조리하는 부엌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획은 조선후기 상류주택의 안채와 유사하다. ‘제청’은 명목상의 성격이고, 실제 성격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택과 동일한 구조는 사랑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조선후기에 주택의 일부를 구성한 ‘사랑’은 안채보다 외곽에 자리하며 남성 전용 공간으로 이해된다. ‘사랑’은 안채를 전제한 것으로 단독으로 성립할 수 없는 명칭이다. 그러므로 제청 건물과 사랑 건물로 구성된 명은공주 제청은 공방 제택에 포함할 수 있다. 제청 영역을 30칸 규모의 담장으로 구획하고 출입하는 문을 ‘신문(神門)’이라 한 것은 제사 시설의 성격을 보여준다. 대문, 중문으로 이어지는 동선과 대문 인근에 부속채가, 중문 인근에 사랑이 있고 중문 안에 마루와 방으로 구획된 제청 건물이 놓인 배치는 주거용 주택의 구조를 보여준다. 담장과 신문을 제거하면 조선후기 상류 주택의 구조가 된다.

명은공주 제청을 숙빈최씨 제청과 비교하면 숙빈최씨 제청에는 없는 사랑이 부가된 구조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자손의 거주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와 자손의 거주를 고려한 구조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유교 원리에 기반한 조선후기 가족 질서에서 후궁이 낳은 자녀는 왕의 정처인 왕비가 어머니가 되었다. 후궁의 자녀 및 그들의 후손과 후궁 사이에는 법적적인 가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후궁 사후 공방의 유지 여부, 사당 건립 여부, 제청 건립 등의 제반 사항을 국가에서 결정하여 집행하였다. 그러므로 후궁의 제청을 건립할 때에 자녀의 희망이나 의도는 반영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국가에서 정했거나 ‘예장원례(禮葬原例)’처럼 공식화 된 규범을 따라 지었을 것이다.

반면에 왕자·왕녀의 제사와 묘소 관리는 후손이 관장하므로 후손이 제청의 규모와 건물 배치에 적극 개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묘소는 영구히 유지되므로, 대수가 다하여 공방의 특권이 소멸한 뒤에도 후손은 계속 제청을 소유하였을 것이다. 산 아래 묘소 인근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별장 역할도 했을 것이다. 후손이 영락했을 경우 주 거주처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명은공주 제청에 ‘사랑’을 추가하여 완전한 주택 구조로 만든 것은 제청의 이와 같은 성격에 유념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건물 구성은 왕자·왕녀 제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3) 경빈(慶嬪) 김씨 제청의 규모와 구획

조선후기 공방 제청의 규모와 구획은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1832~1907)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경빈 김씨의 묘 인근

에 짓는 건물은 ‘제각(祭閣)’, ‘제청(祭廳)’, ‘행각(行閣)’으로 구성되었다.<sup>29)</sup> 제각은 6칸 규모로<sup>30)</sup> ‘신좌교의(神座交椅)’와 ‘대제상(大祭床)’을 설치한 제례 전용 건물이었다.<sup>31)</sup> 반면에 7.5칸 규모의 제청은 조선후기 상류 가옥의 ‘안채’와 구조가 유사하였다. 또한 제청 건물에 행각이 딸려 있는 구조로 총 33칸이었다.<sup>32)</sup>

표 4. 경빈 김씨 제청의 평면 구획과 칸수

구분	구획	칸	전퇴	계
제청	동온돌	2		
	서온돌	1.5		
	대청	2	2	
	소계	5.5	2	7.5
내외행각	동변방	1		
	주	1		
	서변방	1.5		
	주	0.5		
	중문	1		
	동변방	2		
	주	1		
	청	2	1	
	누	1		
	서변방	1.5		
	서변고	4		
	축	1		
	남변청	1		
	방	2		
	주	1		
	고주대문	1		
서변허간	2			
소계	24.5	1	25.5	
총계			33	

[표 4]에서 보듯 경빈 김씨 제청 일곽은 ‘제청’ 건물과 ‘내외행각’으로 구성되었다. 중문에 이어지는 동변방, 서변방, 남변청 등의 명칭은, 북쪽에 중심 건물인 ‘제청’이 있고, 이 건물과 좌우 익랑이 직교하며 중문이 있는 남행랑이 좌우 익랑을 연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외곽에 대문이 있는 ‘一’자 형태의 외행각이 자리하고, 중문을 통과하여 내행각과 제청으로 둘러싸인 ‘口’자 형태의 내정으로 진입하는 구조일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숙빈최씨 제청의 계획 도면과 유사하다.

‘제청’의 평면 구획은 동온돌 2칸, 서온돌 1.5칸, 전퇴가

29) 『경빈예장소등록』, 「보고」, 광무11년 6월 27일

30) 『경빈예장소등록』, 「제각배설」

31) 경빈 묘소에 ‘제각’을 별도로 둔 것은, 대한제국 선포 후 왕릉 정자각을 황제릉 침전으로 바꾼 것처럼, 황제궁에 맞게 의례를 개정한 결과로 보인다.

32) “祭閣六間(중략)祭廳七間半 東溫堦二間 西溫堦一間半 大廳二間 前退二間 內外行閣二十五間半 東邊房一間 廚一間 西邊房一間半 廚半間 中門一間 東邊房二間 廚一間 廳二間 前退一間 樓一間 西邊房一間半 西邊庫四間 廁一間 南邊廳一間 房二間 廚一間 高柱大門一間 西邊虛間二間” 『경빈예장소등록』, 「산역조성제사(山役造成諸事)」

있는 대청 2칸으로 이루어졌다. 2칸 대청 좌우에 방을 배치한 평면 계획은 조선후기 상류 가옥 안채의 보편적 유형이다. 숙빈 최씨와 명은공주 제청과 비교하면 방에 비해 대청 칸수가 적어, 주거 기능이 더욱 강한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빈 김씨 제청은 '사랑'이 없다는 점에서도 숙빈 최씨 제청과 유사하여, 국가에서 정한 건축 규범을 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문 인근에 '사랑'을 추가하면 명은공주 제청과 유사한 구조가 된다.

### 3-2. 별업(別業) 제택의 위치와 성격

궁방에서는 도성 밖에 별업 제택도 소유하였다. '별업'은 고려시대 기록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주 거주처와 떨어진 곳에 마련한 재산을 통칭하였다.<sup>33)</sup> 토지와 토지와 결부된 건물이 별업을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궁방의 '별업' 용례가 제택을 한정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제택 인근의 토지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성 밖 별업 제택의 성격은 조선 전기 '농사(農舍)' 용례에서도 확인된다. 세조는 내수사에 명령하여 후궁과 손자녀에게 토지와 농사(農舍)를 하사하였다. 토지를 공식 단위인 '결(結)'이 아니라 '세 섬을 뿌릴 수 있는 땅[可種三石地]'처럼 종자의 양으로 표현한 것에서 이 토지는 면세 혜택이 아니라 소유권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농사'는 후궁과 월산군에게 두 채[區]를 주고, 자을산군(성종)과 명의공주에게 한 채를 주었다.<sup>34)</sup> 전원에 소재했으며 '농사'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소유 토지를 관리하는 거점이자 별장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조선 전기에 왕실 인사들이 도성 밖에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와 연계하여 제택을 짓는 풍조가 있었음도 확인된다. 양주의 녹양장(綠楊場)은 목장이자 군대를 사열하고 훈련하는 강무장(講武場)으로서 토지 경작이 금지된 곳이었다. 그러나 조정의 관리와 왕실인사(宗戚)들이 노복을 앞세워 토지를 개간하고, 제택을 지어 문제가 되었다.<sup>35)</sup> 조선 전기에 왕족이 사유지를 확장하고 사유지와 연계하여 제택을 지은 것은 양주의 녹양장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궁방의 사유지 확장을 알려주는 기록이 더욱 쉽게 확인된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궁방의 별업 제택은 대부분 유토궁방전(有土宮房田)이 있는 곳에 지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후기 궁방전은 개인 소유 토지에 궁방의 수세권을 설정한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과 궁방 소유 토지에 면세한 유토궁방전

으로 구성되었다. 무토궁방전은 국가에서 세를 거두어 궁방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유토궁방전은 궁방에서 직접 토지를 관리하고 세금을 포함한 도조(소작료)를 징수하였다.

조선후기에 궁방의 면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4대까지만 인정되었다.<sup>36)</sup> 대수가 다하면 무토궁방전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유토궁방전은 면세 혜택만 폐지될 뿐 소유권이 유지되었다. 이에 궁방에서는 지속적으로 토지를 늘려나가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광대한 면세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한 간척지 확보가 활발하였음도 확인된다.<sup>37)</sup>

1779년(정조 3) 시점에 새로 성립한 옹주 궁방[신궁]의 면세 한도가 800결이고, 옹주가 사망한 궁방[구궁]은 제위조(祭位條) 200결만 4대까지 면세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영조의 사망한 딸 화순옹주(1720~1758)와 화길옹주(1754~1772) 궁방은 1779년(정조 3)에도 각기 1493결과 1733결의 면세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면세전 중에서 유토궁방전은 화순옹주 궁방이 210결, 화협옹주 궁방이 68결에 이르렀다.<sup>38)</sup> 화순옹주 궁방이나 화협옹주 궁방에 별업 제택이 있었다면, 유토궁방전과 연계하여 조성했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 궁방의 별업 제택은 농장과 연계하여 지었다는 점에서 도성 내 제택이나 도성 외 제청에 비해 수요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별업 제택의 구체적인 사례는 기록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별업제택은 도성 밖에 위치한 사유 재산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sup>39)</sup> 공적 통제나 관리를 받지 않

36) "임금이 '각 궁방의 면세는 4대 직손에 한하여 허급할까, 최장방에 한하여 허급할까?'라고 하였다...정홍순이 '4대 종손에 한하여 허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上曰 各宮房免稅 限四代直孫許給乎 限最長房許給乎(중략)弘淳曰 限四代宗孫許給 似好矣]." 『승정원일기』, 1379책 정조 즉위년(1776) 4월 10일(신해)

37)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태의 변화」, 『韓國史論』, 11권, 서울대 국사학과, 1984; 양선아, 「19세기 궁방의 간척: 부안 삼간평 용동궁 장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7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영정섭,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궁방전(宮房田)의 변화 추이: 절수(折受)·면세(免稅)에 대한 논의와 정책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60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38) "서유방가 호조의 말로써 아뢰기를 '법전을 살피니 옹주방이 신궁(생존)일 때에는 면세하는 토지가 800결이고, 구궁(사망)일 때에는 제위조 200결을 4대에 한하여 지급해 주는 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순옹주방, 화협옹주방은 지금 구궁이 되었는데 현존하는 면세지의 수가 1493결 22부 1속 내에 ... 유토가 210결 16부 5속이며, 화협옹주방은 1733결 84부 4속 내에 ... 유토가 68결 85부 5속입니다. 법전에 의거하여 제위조 200결 외에 금년부터 모두 세를 거두어 상납할 뜻을 각도에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徐有防 以戶曹言啓曰 取考法典 則翁主房新宮時 免稅八百結 而舊宮時則祭位條二百結 限四代劃給事載錄矣 和順翁主房和協翁主房 今爲舊宮 而時存免稅之數 和順翁主房則一千四百九十三結二十二負一束內(중략)負六束 有土二百十結十六負五束 和協翁主房則一千七百三十三結八十四負八束內(중략)有土六十八結八十五負五束 依法典祭位條二百結外 今年爲始 並爲出稅上納之意 分付各道 何如" 『승정원일기』, 1433책 정조 3년(1779) 1월 6일(신묘)]

39) 혁파한 후궁 궁방이나, 어렸을 때 궁방을 설치해 주었다가 혼인 전 사망하여 혁파한 예외적인 궁방의 경우, 소유 토지, 노비와 더불어 제

33) "龍山素稱有湖山之樂 土且肥衍宜五穀(穀)의 오기 ; 필자) 水運舟陸行車 再霄畫達京都 貴人故多治別業焉" 이승인(1347~1392), 『도은집』, 권4, 문(文) 「추흥정기(秋興亭記)」

34) 『세조실록』, 권45권, 세조 14년(1468) 3월 20일(경진)

35)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1515) 7월 13일(무술)

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필자는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에서 유토공방전과 연계한 별업 제택의 존재와 구체적인 규모를 확인하였다.

명온공주의 장례를 치를 때에 제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묘산 아래에 있는 24칸 규모의 집을 수리하여 성빈청(成殯廳)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집은 해창위궁 즉, 현종의 딸인 명안공주(1665~1687) 공방 소유의 '별업'으로서 전답이 딸려 있었다. 순조는 이 집과 전답을 사서 명온공주 공방에 속하게 하였다.<sup>40)</sup> 값을 치르고 샀다는 점에서 '해창위궁별업'으로 표현된 제택은 토지와 더불어 명안공주 후손의 사유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명안공주 공방의 별업 제택이었던 24칸 규모의 옛 집은 이후 옮겨서 명온공주 제청의 사랑과 행각이 되었다. 해창위궁 별업 제택의 사랑은 그대로 명온공주 제청의 사랑이 된 듯하다. 제청의 '묘직입접처(墓直入接處)'가 각기 1.5칸의 상방(윗방)과 월방(건넌방), 3칸 청과 1.5칸 부엌으로 구성된 것을 보면<sup>41)</sup> 이 부분은 본래 해창위궁 별업 제택의 안채였을 가능성이 크다.

공방에서 자비로 마련한 별업은 공방에 대한 면세 혜택이 소멸한 뒤에도 후손의 풍요로운 경제와 주거 생활을 보장했을 것이다. 이에 공방의 특권이 유지되는 동안 왕자·왕녀와 그들의 자손은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간했으며, 소유 토지가 있는 곳에 별장과 관리시설을 겸한 제택을 지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4. 결론

이제까지 공방 제택을 도성 내 제택, 도성 밖의 제청, 별업 제택으로 구분하고 각 제택의 성격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흔히 '~궁'으로 불린 도성 내 제택은 국가에서 지급하였다. 도성 내 공방 제택은 크고 화려하였다. 규모를 제한하는 법령은 성립 당시부터 회피하거나 어겼으며, 종종 무렵부터는 사문화되었다. 조선후기에 공방의 도성 내 제택은 규모가 대

택도 환수 대상이 되었다고 보인다.(“명령을 전하기를 ‘대’가 다한 공방은 호조판서가 아된 대로 도로 세를 거두고, 온빈·안빈·명선공주·명혜공주...장귀인방의 토지는 모두 호조에 환속하고...혁파한 궁가의 각종 절수한 노비, 제택은 역시 호조 및 내수사가 함께 조사해 내어 문서로 작성하여 아뢰어라.”라고 하였다[傳教曰 代盡宮房 依戶判所奏還出稅 溫嬪安嬪明善明惠公主(중략)張貴人房田結 竝還屬戶曹(중략)而所罷宮家各樣折受奴婢第宅 亦令戶曹及內需司 眼同查出 別單草記以聞.]” 『승정원일기』, 1379책 정조 즉위년(1776) 4월 10일(신해)

40) “제청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성빈청 및 나인 거점처, 제물 숙설처는 산 아래의 옛 집을 수리하여 썼다[이 집은 해창위궁의 별업인데 하교를 따라 가사와 전답의 값을 호조에서 관례대로 정하여 내려주었다. ○옛 집은 24칸이다][祭廳未及畢役 成殯廳及內人所接處祭物熟設處 以山下舊舍修理用之[此舍即海昌尉宮別業 而因下教舍與田畝價自戶曹依例劃下○舊舍二十四間]].”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 『천광지구(穿曠之具)』

41) [표 3] 참조

개 100여 칸을 넘었으며, 200여 칸에 달하는 사례들도 확인된다.

지급 방식은 초기에는 새 집을 지어 주었으나, 점차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수리와 증축을 하는 방식이 관행이 되었다. 명온공주 제택의 사례를 적용하면 안채의 핵심 건물은 대부분 기존 건물을 수리한 반면, 사랑은 대규모 건물을 신축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조선후기 도성 내 공방 제택에는 공방 성립 시점 이전과 이후의 건물, 상이한 건축 기법이나 양식이 혼재하였을 것이다.

공방에서는 이외에도 묘소 인근에 '제청'으로 불린 제택과 도성 밖에 '별업' 제택을 소유하였다. '제청'은 명목상 묘소에 부속된 제사시설이었지만 구조는 제택이어서 왕자·왕녀의 후손이 소유하고 거주할 수 있었다. 제도화된 제청 구조에 제도 없는 사랑을 덧붙여 지은 명온공주 제청의 구조는 왕자·왕녀 제청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국가에서 비용만 지급하고 건축실무를 공방에 일임했을 경우, 상류 주택의 보편적 유형에 더욱 가깝게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별업 제택은 대부분 소유권이 공방에 있는 유토공방전과 연계하여 지었다고 보인다. 유토공방전은 공방이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경영했으므로 규모가 큰 농장의 소재처에는 관리소와 별장의 기능을 겸하는 제택이 필요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명온공주 산소 인근에 있었던, 명안공주 공방의 소유 토지와 24칸 규모의 주택으로 구성된 별업을 확인하였다. 면세 혜택을 주는 대수가 다하여도 별업 토지는 소유권이 유지되므로, 공방에서는 매입과 개간을 통해 유토공방전을 확대함과 더불어 후손이 농장을 관리하며 거주할 수 있는 제택 건축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본고에서 수행한 공방 제택의 유형과 성격 분류는 '궁집'으로 통칭하고 있는 현존 공방 건물을 분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도성 밖 공방 건물을 분석하는 데 유효할 것이다. 현재 도성 밖의 '남양주 궁집', '김진흥 가옥', '창녕위재사', '추사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제택에 본고에서 분류한 유형과 성격을 대입함과 더불어 구조사·양식사 방면의 연구와 결합하면 개별 제택에 대한 해석이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 질 것이다. 나아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공방 제택을 새롭게 발견하고 분석하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search/search.do>. 2024년 10월 1일 접속.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1827)』,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1833)』, 『경빈예장소등록(1907)』.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2024년 10월 1일 접속.

- 『무술첨차일기(1718)』, 『제청급석물조성시등록(1718)』
3.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sjw.history.go.kr/main.do>. 2024년 10월 1일 접속.
  4.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2024년 10월 1일 접속.  
『태조실록』, 『세종실록』, 『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2024년 10월 1일 접속.  
『경국대전』
  6.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2024년 10월 1일 접속  
『도은집』
  7.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태의 변화」 『韓國史論』, 11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4
  8. 안소현·전봉희, 「조선후기 궁실건축에 사용된 격식기법의 유형과 변천」, 『건축역사연구』, 21권, 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9. <https://doi.org/10.7738/JAH.2019.28.6.043>
  9. 양선아, 「19세기 궁방의 간척: 부안 삼간평 용동궁 장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7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10. 염정섭,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궁방전(宮房田)의 변화 추이: 절수(折受)·면세(免稅)에 대한 논의와 정책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60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11.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南別宮)의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권 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20. <https://doi.org/10.7738/JAH.2020.29.1.051>
  12. 정해득, 「조선시대 묘소 관리와 묘사의 확산」, 『대구사학』, 153권, 2023.
  13. 주남철, 『궁집(宮家)』, 일지사, 2003.
  14. 주남철, 「조선시대 청평위궁(淸平尉宮)의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권 7호, 2011.